자동차세(소유) 연세액 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| 접수번호 | | 접수일자 | | | 처리기간 | 즉시 | (並 |
|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|
| 신고인 | ①성명(' | 법인명) | ②주민(법인)등록번호 | | | | |
| (납세의무자) | ③주소(영업소) | | | ④연락처 | | | |
| 신고내용 | ⑤자동차 | 등록번호 | ⑥차종 | ①배기량(적재정량・승차인원・총종 | | 5량) | |
| | ⑧산출세 | 액 | ⑨공제세액 | ⑩납부세액 | | | |

「지방세법」 제128조제3항 및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 세액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시장 • 군수 • 구청장 귀하

환급계좌 신고서

| 은행명 | 계좌번호 | |
|-----|------|--|

자동차 연세액 신고납부 후 자동차 양도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한 위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위 임 장

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의 연세액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.

위임자

(서명 또는 인)

| 위 임 | 성명 | 주민등록번호 | 위임자와의 관계 |
|------|----|--------|----------|
| 받는 자 | 주소 | | 전화번호 |

※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접수증(자동차세 연세액 신고서)

| 신고인(대리인) | 접수연월일 | 신고내용 | 접수번호 | | |
|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|--|
| | | | | | |

「지방세법」 제128조제3항 및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2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.

접수자 접수일

(서명 또는 인) 210mm×297mm(백상지(80g/㎡)

작성 방법

□ 신고인란

- ①성명(법인명): 개인은 성명, 법인은 법인명과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.
- ②주민(법인)등록번호: 개인은 주민등록번호, 법인은 법인등록번호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- ③주소(영업소):
 - 개인: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,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.
 -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: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,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. 다만,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.
- ④연락처: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나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.

□ 신청내용

- ⑤자동차등록번호: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 번호를 기재합니다.
- ⑥차종: 자동차등록증의 차종(승용, 승합, 화물, 특수, 이륜자동차)을 참조하여 적습니다.
- ①배기량: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(cc), 적재정량(Kg), 승차인원(명), 총중량(kg)을 참조하여 적습니다.
- ⑧산출세액: 「지방세법」 제128조제3항에 따른 연세액(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) 을 적습니다.
- ⑨공제세액: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습니다.
- ⑩납부세액: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.
- □ 환급계좌 신고서: 자동차 연세액 신고납부 후 자동차 양도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.
 □ 위임장: 자동차세 신고인을 대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 □ 신고인은 연세액을 신고하는 납세의무자를 말하며,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,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.
- □ 문의사항은 시(군·구) 과(☎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